

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7월 7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」의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20900호, 2008. 7. 3. 공포·시행)에 따라 국단위 기구조정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국단위 기구 조정에 따른 사업소 신설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원을 상계조정함(안 별표 3)
- 나. 정원조정 현황
  - 기관별 정원조정

구 분	계	집 행 기 관						의회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구청	동	
정 원	2,056	2,024	940	143	73	481	387	32
조 정	2,056	2,024	755	145	261	475	388	32
증·감			△185	+2	+188	△6	+1	

• 직렬별·직급별 정원조정

- 일반직(연구직, 지도직 제외)

구 분	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현정원	1,712	15	110	370	564	417	236
조정후	1,712	13	112	386	548	417	236
증·감		△2	+2	+16	△16		

- 기능직

구 분	계	6급	7급	8급	9급	10급
현정원	324	11	42	63	92	116
조정후	324	11	42	63	92	116
증·감						

- 별정직

구 분	계	5급	6급	7급
현정원	9	1	3	5
조정후	9	1	3	5
증·감	-	-	-	-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※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질의답변 내용과 같음.	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25호
의결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6. 2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」의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20900호, 2008. 7. 3. 공포·시행)에 따라 국단위 기구조정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가. 국단위 기구 조정에 따른 사업소 신설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원을 상계조정함(안 별표 3)

나. 정원조정 현황

- 기관별 정원조정

구분	계	집행기관						의회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구청	동	
정원	2,056	2,024	940	143	73	481	387	32
조정	2,056	2,024	755	145	261	475	388	32
증·감			△185	+2	+188	△6	+1	

- 직렬별 · 직급별 정원조정

- 일반직(연구직, 지도직 제외)

구 분	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현정원	1,712	15	110	370	564	417	236
조정후	1,712	13	112	386	548	417	236
증·감		△2	+2	+16	△16		

- 기능직

구 분	계	6급	7급	8급	9급	10급
현정원	324	11	42	63	92	116
조정후	324	11	42	63	92	116
증·감						

- 별정직

구 분	계	5급	6급	7급
현정원	9	1	3	5
조정후	9	1	3	5
증·감	-	-	-	-

## **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 계	2,056	2,056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 장	1	1					
일반직 계	1,712	1,712					
2급	1	1					
4급	12	5	1	1	2	3	
5급	112	32	3	11	10	19	37
6급 이하	1,587	1,587					
별정직 계	9	9					
5급상당	1				1		
6급상당 이하	8	8					
연구직 계	2	2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2	2					
지도직 계	8	8					
지도관							
지도사	8	8					
기능직 계	324	324					